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7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총괄검토	4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취지	4
(2) 제정안의 개관	9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11
2. 주요 조문별 검토	15
(1) 목적	15
(2) 정의	16
(3) 국가 등의 책무	20
(4) 적용범위	21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6)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3
(7)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설치	26
(8) 전담기관의 지정	28
(9)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2
(10) 탄소감축가치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평가·측정·활용	34
(11)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6

(12) 녹색경영혁신기업 육성 등	47
(13) 보칙	56
(14) 시행일 및 유효기간	58

※ 참고자료 59

1.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필요성	59
2. 2024년 기관별 탄소중립 지원사업 현황	60
3.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대비 제정안 실태조사 비교	61
4. 탄소발자국 인증(환경부)과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제정안) 비교	62
5. 탄소감축가치 및 평가모형 개요	63
6.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NGMS)	65
7.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운영(안)	6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 및 IT 선두국가로 도약을 이룬 것처럼 중소기업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의 정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Ⅲ.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 다.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전담기관을 통하여 탄소감축가치 평가와 기업 탄소발자국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녹색경영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보제공,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전문인력 및 교육,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 중소기업 간 협력, 상생협력 등을 지원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사.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안 제23조).
- 아.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녹색경영 혁신형중소기업으로 확인하고 확인기업에 대하여 자금, 판로, 인력, 투자, 부담금 면제, 규제의 신속처리 등을 지원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취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국가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음¹⁾.

국제기구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8년 채택한 보고서²⁾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며,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중장기 비전으로 채택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있음³⁾. 또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⁴⁾ 강화 등 온

1)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세계경제포럼, 2023년 1월 발표)는 향후 10년간 가장 심각한 위험 10개 중 1위~4위가 기후위기와 연관되었다고 발표함.

※ (1위)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 자연재해 및 극단적 기상현상, (4위)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2) 「1.5℃ 특별보고서」 :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 요청하여 작성됨. -탄소중립정책포털

3) 2024년 9월 기준 148개 국가, 271개 도시, (Forbes Global 2,000 기업 중) 1,145개 기업이 넷제로 또는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87%에 해당함.

- Net Zero Tracker(2024), “Net Zero Stocktake 20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5.2.11.)

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문제가 글로벌 핵심 경제이슈로 떠오르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⁵⁾.

우리 정부는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⁶⁾ 등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2023년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전체 감축목표는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로 유지된 가운데, 산업부문의 경우 11.4% 감축을 계획하고 있음.

4) 제품 공급망(Supply Chain) 전반에서 협력업체의 탄소저감 요구

5)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강제조치뿐 아니라, 글로벌 ESG 공시 강화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집약적 제품(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수입 시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른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EU, 2026년부터 시행 예정)
- 글로벌 ESG 공시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일정 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외국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 및 ESG 공시기준 제시)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6) 2050탄소중립위원회 구성(2021)→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2022)

[표 1] 2030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 목표

(단위 : 백만톤CO₂e, 괄호는 20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2018년 실적	2030 감축목표	
			기존 NDC(2021.10.)	수정 NDC(2023.3.)
배출량(합계)		727.6	436.6(40.0%)	436.6(40.0%)
배출	전환	269.6	149.9(44.4%)	145.9(45.9%) ¹⁾
	산업	260.5	222.6(14.5%)	230.7(11.4%)
	건물	52.1	35.0(32.8%)	35.0(32.8%)
	수송	98.1	61.1(37.8%)	61.0(37.8%)
	농축수산	24.7	18.0(27.1%)	18.0(27.1%)
	폐기물	17.1	9.1(46.8%)	9.1(46.8%)
	수소	(-)	7.6	8.4 ²⁾
	탈루 등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 ³⁾
	국제감축	(-)	-33.5	-37.5 ⁴⁾

* 기준연도(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 / 20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 · 제거량)
 1)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400만톤 추가 감축
 2) 수소 수요량 최신화에 따른 공급량 확대 반영 (블루수소 + 10.5만톤 → 온실가스 0.8백만톤 ↑)
 3)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결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4)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 3)

한편, 이러한 산업부문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은 현재로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인력 등의 기반이 부족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정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파악됨.

2021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대상 기업 중 74.6%가 탄소중립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탄소중립 대응 준비와 관련하여 준비가 되어 있거나 준비 중인 업체는

각각 3.2%, 2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⁷⁾⁸⁾⁹⁾.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비용 부담이 62.5%, 정보 및 지식 부족이 23.7% 등으로 조사됨¹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¹¹⁾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¹²⁾.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기업 단위로는 배출량이 적고 배출업종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음.

7) 기술보증기금, “2021년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경영실태”(2021.12, 제조업 대상)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중소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2021.1.25.~2.3.조사)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대응 필요성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80.6%가 “필요(매우 필요 포함)”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대응 준비도에 대하여는 “준비계획이 없다”가 56.1%로, “준비가 되어 있다(하고 있다 포함)”는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9)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조사(2022. 6)에서도,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수준 미흡으로 고객사(원청기업)로부터 계약·수주 파기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다소 낮음’ 40.2%, ‘매우 낮음’ 7.6%).

10)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1.11)에서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기업의 58.7%가 자금·인력 부족을 선택함.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23.5, p96

12)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① 개별 중소기업의 전환, ② 공급망 중심 대·중소기업의 공동 전환, ③중소기업 참여형 시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중소기업(광업 및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8%(1억 344억 톤)를 차지하고 있음.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으며¹³⁾, 주요 배출업종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제조업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3대 세부업종의 배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반면 중소기업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2] 제조업 세부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2020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위: 백만CO₂eq.(배출량), %(비중))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합계(A+B)	
		배출량	비중	배출량	비중		
1	제1차 금속산업	123.5	51.3	8.9	8.6	132.4	38.5
2	화학	38.9	16.2	30.4	29.6	69.3	20.1
3	정유	32.2	13.4	2.0	2.0	34.2	10.0
4	그 외 기타제조업	5.0	2.1	23.0	22.3	28.0	8.1
5	전자장비제조업	20.4	8.5	5.9	5.7	26.3	7.6
6	비금속광물제품	12.1	5.0	10.3	10.0	22.4	6.5
7	펄프종이	2.5	1.0	7.7	7.5	10.2	3.0
8	음식료업	1.6	0.7	7.6	7.4	9.2	2.7
9	자동차제조업	3.4	1.4	3.9	3.7	7.3	2.1
10	섬유제품업	0.8	0.3	3.3	3.2	4.1	1.2
합계	제조업 계	240.5	100.0	103.0	100.0	343.5	100.0

주: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명 미만의 기업을 의미하며,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나열한 것임.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동향과 대응방향”, p72

따라서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13) 동 자료의 확인 결과, 중소기업 에너지 1단위당 배출량은 대기업에 비해 약 1.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입법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제정안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보 제공, 진단 및 컨설팅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녹색경영 혁신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혜택 강화를 규정하고 있음.

(2) 제정안의 개관

동 제정안은 총 5장 36개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전담기관의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탄소감축가치의 평가·활용,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측정·활용 등에 관한 내용임.

제3장은 진단·컨설팅지원, 금융지원, 전문인력 및 교육 지원, 세제 지원,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은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 제도 및 우선지원, 부담금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5장 보칙은 수수료,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
의 공무원 의제 등 제도 운영의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제정안 주요 내용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중소기업의 책무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체계 구축	제7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0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1조	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
	제12조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 및 활용
제3장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13조	정보 제공
	제14조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제15조	금융 지원
	제16조	전문인력 및 교육 지원
	제17조	녹색기술 개발 및 이전·확산 지원
	제18조	디지털화 지원
	제19조	세제 지원
	제20조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제21조	상생협력 지원
	제22조	시급업종 등 지원
	제23조	녹색기술전문기업의 육성
	제24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5조	홍보 및 포상
제4장 녹색경영혁신기업 육성 등	제26조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
	제27조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의 취소
	제28조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제29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장	조	조 제목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제31조	부담금의 면제
	제32조	규제의 신속 처리
제5장 보칙	제33조	수수료
	제34조	보고 및 검사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6조	공무원 의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유효기간

(3)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역량 및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고탄소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변경이 당면한 과제임에도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산업구조 변경과제가 현실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질서 대전환 시대¹⁴⁾에 우리 중소기업이 녹색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4) 애플·구글·BMW 등 241개 글로벌 기업들은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 공급망 기업들에게도 RE100 준수 요구

다만,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하여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이 있으며, 유사영역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산업법”이라 함)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이 있음. 두 법률의 경우 각각 산업 전반(대기업, 관련 기관·단체 포함)의 환경친화적 구조 전환 지원과 환경기술(오염저감 포함) 보유기업의 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⁵⁾.

[표 4] 개별 법률간 주요내용 비교

구분	탄소중립기본법 (환경부)	친환경산업법 (산업부)	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제정안 (중기부)
목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환경기술·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지원 대상	국민, 사업자	산업 및 관련 기관·단체	환경산업 영위 기업	일반 중소기업
지원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 등	에너지·자원 절약, 환경오염 감소	환경오염 예방·감소, 환경복원	녹색경영 활성화, 녹색혁신기업 육성 등
지원 내용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기후대응기금 운용 등	청정생산기술 보급, 자원생산성 향상, 환경규제 대응, 녹색경영 촉진	기술개발·실용화, 신기술 인·검증	진단 및 컨설팅, 금융, 세제 지원, 녹색혁신기업 육성 지원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15) 그 밖에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및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제55조),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제59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¹⁶⁾.

또한, 친환경산업법은 녹색경영 도입을 위하여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제6조의2),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청정생산지원센터 지정(제7조),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제15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⁷⁾.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8. < 생략 >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은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이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을 위한 타 부처 소관의 기본법 및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 설계와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정책 연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이 다른 것으로 확인됨.

먼저,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기본법인 탄소중립기본법과 환경기술산업법 등 현행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에 관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별도 법안 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제정안의 상당 부분은 친환경산업법 등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에 관한 기존 법률과 중복되며, 법률간·부처 간 영역 중복에 따른 행정 혼선 및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상 탄소중립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되, 기본법에서 파생된 타 법률과 지원목적·대상 및 내용을

로 정한다.

차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제2205854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¹⁸⁾.

2.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¹⁹⁾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조항은 해당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

18)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 부처로 하여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제220089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확하게 요약하여 해당 법률의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입법목적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 등을 함께 기술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²⁰⁾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의견임²¹⁾.

(2) 정의

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녹색경영”, “녹색기술”, “탄소감축가치”,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

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21) <비교 입법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정 안

- 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6. “녹색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말한다.
 7.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이하 “녹색경영혁신기업”이라 한다)이란 녹색경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2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기업을 말한다.
 8. “녹색기술전문기업”(이하 “녹색기술전문기업”이라 한다)이란 녹색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9. “탄소감축가치”란 녹색경영을 통하여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가액(價額),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산정한 가치를 말한다.
 10.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이란 중소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 “온실가스” 및 “녹색기술”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의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법률 간 관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²⁾.

2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인용 정의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

다만, 일부 정의규정의 경우 해당 조항의 필요성, 명확성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³⁾.

첫째, 안 제2조제5호 “녹색경영”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동 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실행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용 법률인 탄소중립기본법을 정의 조문에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2조제8호 “녹색기술전문기업”의 경우 녹색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녹색기술전문기업에 대한 사항이 제정안 제23조(녹색기술전문기업의 육성) 및 제24조(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조항에서 해당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3)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용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260

셋째, 안 제2조제10호의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은 중소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²⁴⁾ 및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3조²⁵⁾ 규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한 유형인 ‘탄소발자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탄소발자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²⁶⁾ 측정 단위를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고, 온실가스로 인한 특정 시점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에서, 측정 단위가 ‘중소기업’이고, 온실가스의 동태적 변화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중소기업 탄소발자국’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2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25)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3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2.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26)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및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참고

[표 5]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및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비교

구분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측정 단위	중소기업	제품
측정 대상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생산, 수송, 건물, 내부경영 등)	제품의 밸류체인 (원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측정 시점	시점별 동태적 변화 측정	특정 시점
근거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1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8조

이에 대해 **환경부**는 탄소발자국은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 및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3조 규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3) 국가 등의 책무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노력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설비 및 공정 개선, 폐기물 재활용 촉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의 책무)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녹색경영을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역량 향상,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의 녹색경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녹색경제를 말한다)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적용범위

안 제5조는 동 법률안의 적용범위를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대상이 중소기업인 만큼, 법률안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임.

안 제5조 단서에서는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행산업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²⁷⁾.

27) <비교 입법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6조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동 규정은 각 법률 상호간 또는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탄소중립기본법 제55조가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²⁸⁾,

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산업체(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녹색기업(오염물질의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확보 및 해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지하는 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촉진,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친환경산업법은 녹색경영 촉진 등 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6조와 같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 상호 간의 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석·집행상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특례’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여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²⁹⁾.

(6)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7조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중소기업 녹색경영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정 안

제7조(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 금융, 기술개발, 기업 간 협력 등의 지원
3.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
4.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및 녹색경영혁신지구 지정제도 운영
5.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중소기업 녹색경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이며,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등을 위하여 연도별로 수립되는 실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동 기본계획 등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총괄 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으로써, 이를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³⁰⁾.

다만, 안 제4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획의 변경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³¹⁾.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은 안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인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안 제7조제4항의 본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²⁾.

30) 기본계획 비교(출처: 중소기업부)

‘탄소중립기본법’ 기본계획	제정안 기본계획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정의로운 전환 ▶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	▶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 금융, 기술개발, 기업 간 협력 등의 지원 ▶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 ▶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및 녹색경영혁신 지구 지정제도 운영 ▶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그 밖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 필요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1) <비교입법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2) <비교입법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등이 제정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안 제7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기본법상의 녹색경영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선언적이며, 친환경산업법 역시 산업과 기업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한 산업 전체의 환경친화적 구조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7)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설치

안 제8조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보호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정 안

- 제8조(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 ③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³³⁾가 설치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별도의 위원회 조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정부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일괄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므로³⁴⁾, ‘중소기업

33) 「중소기업 기본법」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형태로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³⁵⁾.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탄소중립 분과를 설치하여 심의·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8) 전담기관의 지정

안 제9조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을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4)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2022. 7)에 따라 각 부처별로 ① 장기간 미구성, ② 운영실적 저조, ③ 공무원들로만 구성되거나 민간위원 참여 저조, ④ 위원회 간 기능 유사·중복, ⑤ 단순 자문기능 수행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부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정비가 완료된 상태임.

3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정 안

1.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2.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금융·기술·인력·교육·디지털화·컨설팅 등 지원
 3.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운영 지원
 4. 탄소감축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모형의 개발 등 탄소감축가치 관련 조사·연구 및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5.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 및 감축 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6.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안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센터를 둘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받은 전담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제1항에 명시된 3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및 경영지도, 판로 및 경영지원, 기술혁신 및 정보화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⁶⁾.

또한, 3개 기관은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후대응보증 사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및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R&D) 등의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2024년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음(참고자료 2).

따라서 탄소중립 분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접근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9조는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율하고 있을 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36)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개요(중소벤처기업부)

기관명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근거법	「기술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법」 제68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설립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화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강화 지원
설립일	'89.04.01.	'79.01.17.	'02.1.22.
임직원수 (2023년 말)	1,501명	1,382명	290명
탄소중립 수행인력	21명	13명	11명
탄소중립 전담조직	보유	보유	미보유
주요업무	- 기술보증 - 보증연계투자 - 기술평가 - 경영지도·기술지도 - 신용조사 - 기술거래·보호 - 기술신탁·관리 -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 자동화·정보화 지원 - 기술개발·사업전환 지원 - 판로지원·연계생산지원 - 물류현대화지원 - 협업사원지원 - 창업지원 - 경영·기술진단 - 전문기술인력양성	- 기술개발 지원 - 기술혁신 기반조성 - 기술혁신 정책연구 - 혁신사업 조사·분석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 전문인력양성

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산업법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³⁷⁾, 녹색경영추진본부³⁸⁾ 등의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이 가능하므로, 안 제9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는 정책의 세부목적, 대상을 고려하여 별도로 개별 전담(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활용 중³⁹⁾이고, 중소기업 탄

37)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8)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진과,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자문 및 교육·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9) <비교 사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산업부, ‘20.2~)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소중립 지원에 관하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개별 사업을 추진해온 바가 있으므로, 정책 목적에 맞게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9)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안 제10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중소기업 녹색경영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경영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산업부, '24.2~)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 공공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중소기업이 당면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적시 대응하고, 역량·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제품별·공정설비별 배출량,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산업법에서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 이행현황,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 실태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이 우려되므로⁴⁰⁾, 안 제10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친환경산업법은 산업과 기업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한 산업 전체의 환경친화적 구조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참고자료 3).

4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탄소감축가치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평가·측정·활용

안 제11조는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탄소감축가치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금융지원이나 녹색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 또는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측정 결과를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1조(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탄소감축가치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게 제15조에 따른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규모의 결정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지원(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 및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안 제11조는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시에는 의무적으로 탄소감축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 외 지원 시에는 결과에 따라 우대지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탄소감축가치 중심으로

금융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2조는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의 생산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변화인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배출량 변화 결과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이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녹색경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⁴¹⁾ 및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3조⁴²⁾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한 유형인 ‘탄소발자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대기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⁴³⁾ 안 제12조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42)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3조(환경성적표지의 표시내용) ①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2.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결과

43)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및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참고

에 따른 중소기업 탄소발자국과 개념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측정 단위, 대상 및 시점 측면에서 제정안의 기업 탄소발자국은 환경부의 탄소발자국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참고자료 4).

(11)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정안(안 제3장, 제13조부터 제25조까지)은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정보 제공, 녹색경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녹색경영에 필요한 금융지원, 전문인력 및 교육지원, 녹색기술 개발 및 이전·확산 지원, 녹색경영을 위한 디지털화 지원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3조(정보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탄소중립 관련 정책 등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단체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체제의 구축 2. 전문가를 활용한 중소기업 녹색경영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3. 그 밖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관련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녹색경영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진단 및 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중

제 정 안

소기업에게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진단 및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금융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공정이나 설비를 개선하는 등 녹색 경영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녹색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투자, 유동화회사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 및 교육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인식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녹색경영 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녹색기술 개발 및 이전·확산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 등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그 밖에 녹색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

제 정 안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기술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하여 녹색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과 녹색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디지털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디지털화 기반 조성 및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 및 활동 등을 위하여 소그룹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한 조합이나 협회 또는 단체 등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상생협력 지원)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기반 조성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
4.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사항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는 경우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

제 정 안

을 위한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급업종 등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이 시급하거나 녹색경영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녹색기술의 이용·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종 등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기술전문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녹색기술전문기업의 창업 지원
 2. 녹색기술전문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3. 녹색기술전문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녹색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정보 제공
 2. 중소기업과 녹색기술전문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신청 및 평가 등 관리
 4. 탄소감축가치 평가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관련 자료의 저장,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 ②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홍보 및 포상) ① 정부는 중소기업 녹색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또는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감축 우수 사례 발굴·홍보,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세미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또는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감축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먼저, 정보 제공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안 제13조(정보 제공), 제18조(디지털화 지원) 및 제24조(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안 제13조는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탄소중립 관련 정책 등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는 중소기업의 효율적 녹색경영을 위하여 기반조성,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확산 등의 디지털화 지원을 추진하고,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안 제24조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녹색경영 추진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시스템을 녹색경영 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관련 자료의 저장, 관리 및 활용, 주요 추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산업법 규정에 따라 정부가 청정생산기술·사업장, 녹색경영, 국제 환경규제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므로, 안 제13조와 제2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⁴⁴⁾.

4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

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법 규정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제공 시스템 및 녹색기업 등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검증시스템이 기 구축·운영 중⁴⁵⁾인 상황이므로, 마찬가지로 안 제13조와 제2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안 제14조의 진단 및 컨설팅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녹색경영을 위해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 이를 실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산업법 제19조⁴⁶⁾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진단·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담당하는 부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 제1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망을 구축·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4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4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친환경산업법은 산업과 기업을 포괄하는 산업 전체의 환경친화적 구조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경영 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기 곤란하며, 자발적 녹색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15조의 금융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제정안은 생산공정·설비개선 등 녹색경영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을 통해 자체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에 녹색경영 투자를 위한 필요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⁴⁷⁾에 규정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용도를 보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자동

4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5. (생략)
6.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 15.~24. (생략)

화·정보화·사업전환·환경오염줄이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 녹색경영에 지원하는 것은 해당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탄소중립을 위해 각각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정책자금 융자 및 녹색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표 6] 탄소중립 관련 금융지원 현황

구분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녹색보증 (기술보증기금)
대상기업	-신재생에너지, 물·대기 관리, 환경정화 등 그린분야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
자금용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 정책자금기준금리(변동) +0.5%p	-신·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이용·보급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 우대사항 - 보증비율 상향(85%→95%) - 보증료 0.2%감면 - 보증지원가능 평가등급완화
내용	-친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통한 우대보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친환경산업법 제5조⁴⁸⁾는 친환경·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자의 생산공정 개선 및 설비 개선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소중립기본법 제59조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7조의 기술개발 및 이전·확산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기관 등이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비용출연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녹색경영 촉진과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할 경우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친환경산업법 제6조⁴⁹⁾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4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① 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설비를 고쳐 바꾸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의 일반회계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5.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4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녹색제품의 설계·생산 기술
5. 생태산업개발 관련 기술
6.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추진과 관련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제정안과 같이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19조 세제 지원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이나 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조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⁵⁰⁾ 동 제정안 자체만으로 직접

7. 재제조 산업, 기업 간 자원 및 에너지 연계 이용,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관련 기술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술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50)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도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

조세 감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안 제23조의 녹색기술전문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즉 녹색기술 공급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녹색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등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는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비용의 보조·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⁵¹⁾

다만, 안 제23조제2항은 녹색기술전문기업이 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녹색기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5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 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융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경제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술전문기업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환경부**는 안 제23조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제59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⁵²⁾.

(12) 녹색경영혁신기업 육성 등

제정안(안 제4장, 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은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 및 그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하여 자금·판로 등의 우선 지원 및 공공구매 지원, 벤처기업에 준하는 특례 적용,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관련 지원 특례 적용, 부담금 면제 및 규제신속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6조(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경영 혁신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색경영 혁신 필요성 및 목표 수준

5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정 안

2. 녹색경영 혁신을 위하여 활용하는 기술, 방법 등 혁신의 내용, 실시기간과 기대효과

3. 녹색경영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조달계획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하여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혁신 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행 여부와 실적 조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녹색경영혁신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제재, 국세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4. 녹색경영혁신기업이 스스로 확인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① 정부는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하여 자금, 판로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녹색경영혁신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제 정 안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및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영혁신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교육공무원등의 휴직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은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 본다.

③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녹색경영혁신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녹색경영혁신기업 주식의 인수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부담금의 면제) ①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 제32조(규제의 신속 처리) ① 녹색경영혁신기업은 녹색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공정의 개선,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의견,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의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녹색경영혁신기업,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녹색경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녹색경영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안 제26조의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녹색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녹색경영혁신기업 중심으로 선도 사례가 창출되어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분위기 확산 및 이에 따른 지속 가능한 녹색경영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이 입법 목적으로 이해됨.

안 제27조는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 제도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7조제1항 본문은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재량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호 “녹색경영혁신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제3호 “휴·폐업, 조업중단, 금융제재, 국세체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녹색경영혁신기업으로서 제정안 제28조 우선구매 지원, 제3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제31조 부담금의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³⁾.

53) <비교 입법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기술 및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하 “녹색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둘째, 안 제27조제1항제2호는 “녹색경영혁신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제26조제5항에서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28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녹색경영 혁신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공공분야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녹색경영혁신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28조제3항은 우선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협조 요청의 내용 및 수준,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와 유사한 입법례⁵⁴⁾를 참고하여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2.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인증이나 확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인증 및 확인,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8조(소재·부품·장비 수요창출)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조 요청의 내용 및 수준, 구체적인 이행 방식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30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녹색경영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주식의 인수에 사용한 금액을 투자의무비율 산정 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⁵⁵⁾, 녹색경영혁신기업의 보급·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0조가 인용하고 있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에 포함되는 투자 대상 사업으로 동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⁵⁶⁾, 투자의무비율에 포함되는 사업 대상에

5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5.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해

녹색경영혁신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은 법체계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안 제31조는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및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의 도입 목적과 타 사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및 교통혼잡 등 반대효과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안 제31조제1항제1호(개발부담금) 및 제2호(교통유발부담금)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 제32조는 녹색경영혁신기업이 녹색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공정 개선, 연구개발 활동 등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 ombudsman과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외투자

6.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투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 ⑤ < 생략 >

첫째, 안 제32조제4항은 중소기업 ombuds만이 관계 행정기관에 규제 개선의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제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인 중소기업 ombuds만이 강행 규정에 의하여 타 부처의 규제 업무에 대해 확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⁵⁷⁾. 특히,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된 규제 개선에 대하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율 및 협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관한 강행 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32조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의 개선에 대한 신청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심사기준, 협조 요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부처 간 추후 협의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⁵⁸⁾.

5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제5항이 관계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을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비교 입법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5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13) 보칙

제정안은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안 제33조)와,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 및 이해상황 관리를 위한 보고 및 검사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5조) 및 공무원 의제 조항(안 제36조)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3조(수수료 등)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혁신기업의 확인 및 이행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제9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소기업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전담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35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규정의 필요성이 있음.

다만, 안 제36조는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8조제1항에서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라고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 제36조는 안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의 실무추진단에 소속된 직원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센터에 소속된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추진단 및 혁신센터에 소속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검증기관이나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를 적용한 입법례⁵⁹⁾가 있음.

59) <비교 입법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의 임원 및 직원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2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14) 시행일 및 유효기간

제정안(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제정안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안 부칙 제1조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하위 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로 하여 한시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 동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실제 법률 유효기간은 최대 7년이 될 것임.

문 의 처

02)6788-5467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참고자료】

1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 필요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국내·외 탄소중립 추진 동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확산* →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20.10월)

* (법제화) 스웨덴·영국 등 6개국, (법안 상정) EU·한국 등 5개국, (정책문서) 일본·독일 등 8개국 이상

- CBAM, 공급망 실사 및 주요국 ESG 공시 제도화 등 글로벌 탄소규제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 불가피

* (EU) 공급망실사지침 발표('24.7), (美) 상장기업 배출량 정보공시 의무화('24.3)

-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Net-Zero 선언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도 확산되는 상황

* 애플, MS, ASML 등 글로벌 기업은 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Net-Zero 선언

□ 중소기업의 현주소

- 배출권 거래제 등 대기업 규제중심 현행 제도 하에서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 규제대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 중소기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5%* 차지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전환이 필수적

* 자료: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에너지관리공단)(300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 그럼에도 대·중견기업에 비해 자본·정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필요성을 인식해도 준비하는 데 역부족

◇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제로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 필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사업명	회계	'24년 예산
계		2,796
① 기술보증기금		500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기후	500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56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일반	30
중소기업혁신바우처(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일반	118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지특	40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기후	138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기후	24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중진	967
사업전환자금(탄소중립)	중진	500
연수사업(탄소중립관련인식개선)	중진	239*
③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40
창업성장기술개발(R&D)(전략형-그린뉴딜)	기후	31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R&D)	기후	58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R&D)	기후	33
그린뉴딜유망기업 100	R&D	41
	사업화	77

* 연수사업은 전체예산으로 탄소중립 인식개선에 일부 활용 예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

- 산업부는 근거법*에 따라 '05년 DB 구축사업을 시작, '10년까지는 3년 주기로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 실시

* 「에너지이용활성화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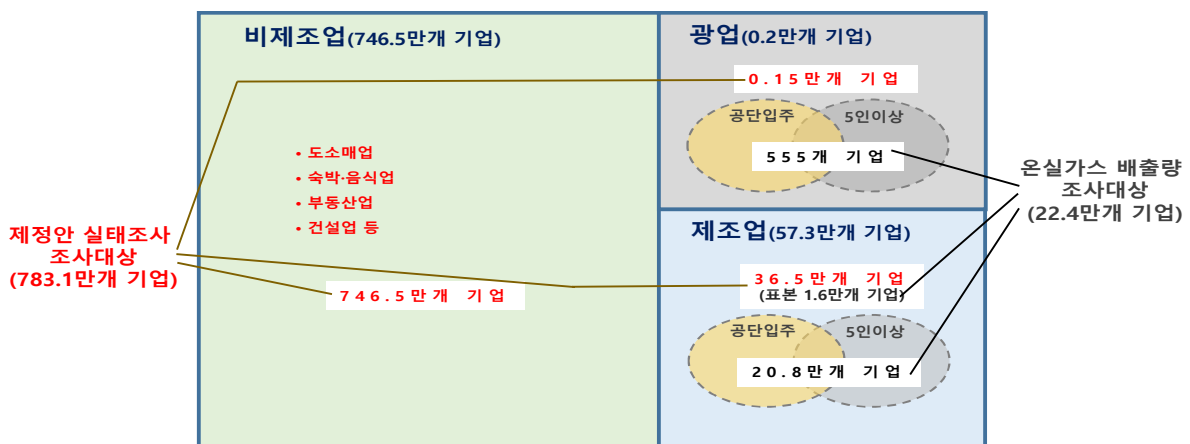
- '11년부터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해 업종, 지역, 규모, 용도, 공정 등으로 구분된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 최신 실태조사('22년)에서는 전수조사(5인 이상 산단 입주기업, 20.8만개) 및 표본조사(그외 기업 중 1.6만개)를 병행 수행하고 있으나,
 - 중소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제조업, 5인 미만 및 산단 미입주 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부재

<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개요 >

항목	내용
조사대상	· 광업·제조업 부문 약 22만개 사업장 (총 57만기업 중 일부)
표본설계	· 종사자수 5인 이상 ,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그외 업체 일부
조사지역	· 전국 17개 광역시도
조사방법	· 면접원 사업장 방문, 온라인 조사 등 병행
실사기간	· 약 5개월 (22년 실태조사 기준 '23.6~10월 실사)

□ 본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안)

-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전체 모집단 대상(전체 804만개) 표본조사 및 중소기업형 테마 실태조사(제품, 공정·설비별) 필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탄소발자국 인증(환경부) 현황

- **(정의)** 제품·서비스의 원료 획득, 생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CO₂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
 - * 환경영향성적표지(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광화학 스모그 등) 중 하나에 해당
 -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중 ①탄소배출량을 줄이고 ②탄소배출량이 동종 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저탄소제품(2단계) 인증' 부여
- **(근거 법령)**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고시)

□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개요(제정안)

- **(정의)**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의 생산 등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

$$i\text{년도의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 Q_{\text{생산}} + Q_{\text{수송}} + Q_{\text{건물}} + Q_{\text{기타}}$$

$Q_{\text{생산}}$ = 제품·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연소, 공정배출)

$Q_{\text{수송}}$ = 제품·서비스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Q_{\text{건물}}$ = 중소기업의 공장·사무공간 등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Q_{\text{기타}}$ =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환경부 인증과의 차이점)** 측정 단위(제품 vs 기업), 대상(제품의 밸류체인 vs 기업 경영활동) 및 시점(특정 시점 vs 동태적 변화) 측면에서 차별화

	탄소발자국 인증(환경부)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제정안)
측정 단위	제품	중소기업
측정 대상	제품의 밸류체인 (원료,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생산, 수송, 건물, 내부경영 등)
측정 시점	특정 시점	시점별 동태적 변화 측정

- **(활용 방안)** 기업 탄소발자국 측정 및 감축방안 컨설팅,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원수단 연계, 우수기업 우대 지원 및 홍보·포상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모형이며, 법률안 제정 이후 구체화 예정

□ 모형 개요

- **(탄소감축가치)** 녹색경영을 통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
- **(탄소감축가치 평가모형)** 탄소감축가치를 산정·평가하는 모형

$$\text{탄소감축가치} = \sum_{t=1}^n \left(\frac{\text{추정감축량}_t \times \text{배출권가격}}{(1+r)^t} \right)$$

(r = 할인율, n = 온실가스 감축기간)

- **(추정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활동별 감축량의 합’으로, 각 감축활동별로 기준배출량과 사업배출량의 차이를 산정*

* 예: 에너지고효율 설비 도입(감축활동)에 따라 설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과 설비 도입 시 배출량(사업배출량)의 차이(감축량) 산정

구분	기준배출량 (Baseline Emission, BE)	사업배출량 (Target Emission, TE)
정의	감축활동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체 시나리오에 의한 배출량	감축활동 추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배출권가격)** 추정감축량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최근 1년간 실제 거래 배출권 가격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
- **(할인율)** 온실가스 감축기간 동안 발생할 추정감축량의 현재가치 환산

□ 활용 방안(안)

- **(녹색특화보증)** 녹색경영프로젝트보증, 기후테크보증 등 특화보증 사업을 실시하여 탄소감축가치 중심으로 심사·지원
 - * 녹색경영프로젝트보증: 온실가스 감축활동(설비투자 등)의 탄소감축가치를 평가하여 소요자금 지원
 - ** 기후테크보증: 개발하려는 기술의 탄소감축가치를 평가하여 개발자금 등 지원
-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 우대)** 탄소감축가치를 등급화하여 일정 등급 이상 기업을 인력·기술개발·디지털화 등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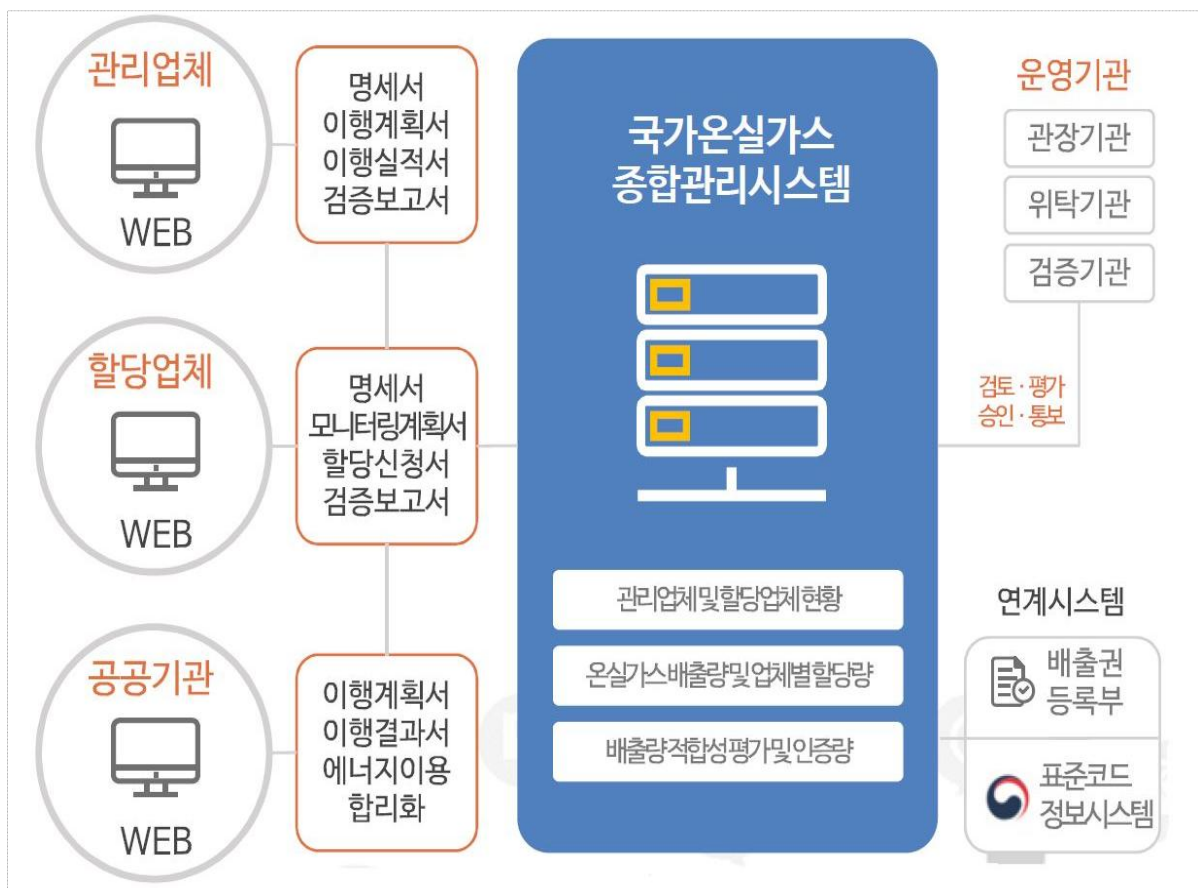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할당대상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DB화* 하여 국가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National GHGs Management Systems

*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운영의 기반이 되는 배출권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할당신청서, 모니터링계획서 등을 DB화

< 국가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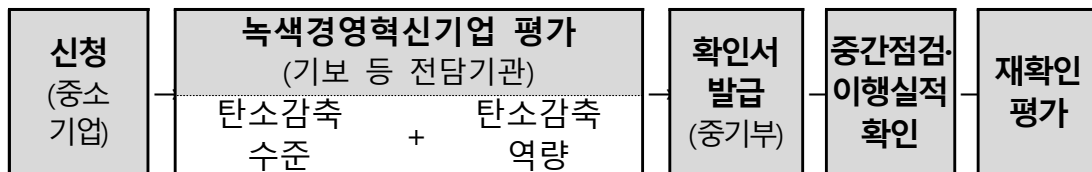


- (배출권거래제 지원) 배출권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서, 통계자료, 검증보고서 등 입력, 관리 지원
- (목표관리제 지원) 명세서, 이행계획서, 이행실적서, 통계자료, 검증보고서 등 입력, 관리 지원
- (연계시스템)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해 배출권등록부와 연계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개요) 향후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한 인증체계를 갖춘 지원제도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녹색경영 혁신계획에 대한 감축현황과 계획 사업 달성 역량을 평가하여 확인하고, 향후 계획달성 여부 검증
- ①이행계획 평가 → ②확인 → ③중간점검 → ④이행실적 확인 → ⑤재확인 진행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인증절차(안)>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Carbon Trust* 등) 및 국내 현행 인증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합한 평가체계 및 지표 도출
- * 탄소발자국인증 등을 운영하는 영국 비영리 전문기관으로 탄소경영 인증제도 운영 중
-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대기업 Scope 3 공시에 대응)
- (평가항목) 총 16개 정량 및 정성 지표 항목(70점 이상시 선정)
- (우대사항) R&D, 금융, 투자, 해외진출 우선 지원 등
- ※ (특징) 특정 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이 아닌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이행을 통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 녹색경영 이해도·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녹색경영 유도 및 DB(인벤토리 등) 관리 등 중소기업의 GX 유인